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최근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채무보증 제한 및 투자 금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에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이후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인관련자 제외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한 우회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한편,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시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보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호가목).

나. CVC 투자 제한 관련 탈법행위 규정 신설

CVC가 법상 투자 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호).

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결정 취소 사유 보완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3호).

라. 기타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인용 조문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2항 본문·단서, 제46조제2항제3호, 제91조제1항제6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23. ~ 9. 1.)

3) 행정규제: 규제심사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26조제5항, 제29조 제2항제1호,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2항 본문·단서 및 제46조제2항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에 따라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제20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13항”을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3호로 하면서,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 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마.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
하게 되는 주식

바.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마목 1) 또는 2)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법 제20조제3항
제4호에 따른 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해 법
제20조제3항제5호 가목 내지 라목의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
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

제9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
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원으로 선임(재선임 및 임기연

장을 포함한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 ----- ----- -----.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상</u>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1. ----- ----- ----- ----- ----- <u>재무상태표</u> ----- ----- ----- ----- -----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상</u>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	2. ----- ----- ----- ----- ----- <u>재무상태표</u> ----- ----- ----- -----

현행	개정안
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u>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 ② ----- ----- ----- ----- ----- <u>재무상태표</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1항에 따라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u>대차대조표</u>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u>대차대조표</u>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2. (생략)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u>에 표시된 자본총액(<u>대차대조표</u>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 -----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 ----- ----- -----. 1. 2.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 ----- -----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 -----.

현행	개정안
1.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없는 경우: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u>에 표시된 자산총액 2.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u>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 ②·③ (생략)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	1. ----- ----- ----- ----- 재무상태 <u>표</u>----- 2. ----- ----- ----- 재무상태<u>표</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제8조의2제4항제1 <u>호</u>-----

현행	개정안
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그 매매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략) ③ ~ ④ (생략) 제25조(채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① ~ ④ (생략) ⑤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전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	----- -. ----- ----- ----- ----- -----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채납처분의 위탁) ① ----- ----- 제16조제4항-----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현행	개정안
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은 <u>대차대조표</u> 및 주식소유 현황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⑦ (생략)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u>대차대조표</u>·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3. (생략) ③·④ (생략)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u>재무상태표</u>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재무상태표</u> ----- ----- ----- ----- -----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현행	개정안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u>대차대조표</u>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1. ~ 7. (생략) ⑤·⑥ (생략)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u>대차대조표상</u>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	----- ----- ----- ----- ----- -----, ----- ----- <u>재무상태표</u>----- ----- ----- -----. 1. ~ 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 ----- ----- ----- ----- ----- <u>재무상태표</u>----- ----- ----- ----- -----

현행	개정안
전 사업연도의 <u>대차대조표</u>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1. ~ 6. (생략) ② ~ ⑩ (생략)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u>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u>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u>채무상대표</u>-----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 ----- <u>다음</u> ----- ----- -----. 1. <u>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u> 가.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

현행	개정안
	<u>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u> <u>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u> <u>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권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u> <u>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u>

현행	개정안
	<u>마. 자기가 취득·소유하면</u> <u>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u> <u>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u> <u>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u> <u>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u> <u>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u> <u>금 취득·소유하도록 하고,</u> <u>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u> <u>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u> <u>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u> <u>행위</u> 1) <u>법 제22조제1항에 따라</u> <u>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u> <u>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u> <u>하게 되는 주식</u> 2) <u>법 제22조제1항에 따라</u> <u>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u> <u>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u> <u>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u> <u>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u> <u>당하게 되는 주식</u> <u>바. 자기가 취득·소유하면</u> <u>마목1) 또는 2)에 해당하게</u> <u>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u>

현행	개정안
2. <u>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u>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u>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u>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법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해 법 제20조제3항제5호 가목 내지 라목의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 <삭 제>

현행	개정안
<u>행사하는 행위</u> 4. <u>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u> 5. <u>자기가 취득·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u> <u>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u> <u>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계 되는 주식</u> 6.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대차대조표</u>”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법 제20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u>대차대조표</u>를 말한다. 다만, <u>대차대조표</u>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u>대차대조표</u>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	<삭 제> 3. ----- <u>제1호 및 제2호</u>----- ----- ----- ----- -----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재무상태표</u>----- ----- ----- ----- <u>재무상태표</u>----- ----- ----- <u>재무상태표</u>----- ----- ----- <u>재무상태표</u>----- ----- -----

현행	개정안
성한 <u>대차대조표</u>에 따른다.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2. (생략)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u>대차대조표</u> 및 손익계산서 4. 5. (생략) ③ ~ ⑦ (생략)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5. (생략) 6. <u>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u>	--- <u>재무상태표</u>-----.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u>재무상태표</u>----- ----- 4.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규모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u>)의 불공정거래행위 <u>7. ~ 9.</u> (생략) ② ~ ⑤ (생략)	<u>6. ~ 8.</u>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41